

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

증서번호 :2024-499788-000

■ 계약사항

계약자	다솜재가노인복지센터	사업자번호	235-80-00781
주소	경남 통영시 용남면 대곡길 35 다솜재가노인복지센터		
공제기간	2024-10-12 ~ 2025-10-11		

※ 공제(보장)기간은 공제기간 시작일 00:00 ~ 공제기간 종료일 24:00입니다.

■ 피보험자 (피제공사)

시설명	다솜재가노인복지센터	시설유형	장기요양기관
소재지	(53030) 경남 통영시 용남면 대곡길 35		
특이사항			

■ 가입담보 / 금액

	가입담보	가입금액(천원)			산출 기초	공제기간	공제료
		1청구당	연간총 보상한도	자부담			
1	전문직업배상책임-주야간보호(대인/대물)	100,000	100,000	500	33명	2024.10.12~2025.10.11	1,239,054
2	형사방어버비용	5,000	5,000	0		2024.10.12~2025.10.11	0

	가입담보	가입금액(천원)			산출 기초	공제기간	공제료
		1인당	1사고당	자부담			
1	시설소유(관리)자-주야간보호 (대인)	150,000	500,000	100	38명	2024.10.12~2025.10.11	584,850
2	시설소유(관리)자-주야간보호 (대물)	0	10,000	100	38명	2024.10.12~2025.10.11	43,812
3	구내치료비-치료비 (대인)	5,000	5,000	500		2024.10.12~2025.10.11	0

	가입담보	가입금액(천원)			산출 기초	공제기간	공제료
		1청구당	1사고당/ 연간 총 보상한도	자부담			
1	생산물-음식물 (대인)	30,000	100,000	300	5 억	2024.10.12~2025.10.11	30,547

■ 납입 공제료

납입일	납입액(원)	납입일	납입액(원)	납입일	납입액(원)	납입일	납입액(원)
2024-10-04	1,898,200						

■ 계약부가조건(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)

- ☐ 피공제자의 공동비율 (Co-Insurance) 적용 (전문직업배상 및 시설소유자배상 담보에 한함)
: 공제증서에 명기된 자부담금을 초과하고 가액금액(보상한도액)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에 명기한 피공제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.
* 피공제자 부담비율
- 청구액 1,000만원 이하 : 10%
- 청구액 1,000만원 초과 : 20%
- ☐ 시설소유(관리)자배상 담보는 '화재로 인한 배상책임'을 포함합니다.
- ☐ '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'의 '입소시설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' 적용
- ☐ 소급담보일자 : 공제 효력 개시일과 동일.전문직업배상 담보에 한합니다.
- ☐ 보고연장기간 : 60일 (공제회는 이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. 단, 전문직업배상 담보에 한합니다)
- ☐ 공제계약은 '수급자 기준 증권'이므로 입소정원 또는 실입소자수(현원) 변동시 통보하여 변경 배서를 하여야 합니다.
- ☐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
- ☐ 피공제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부담보
- ☐ 어떠한 경우에도 전염병 또는 감염병에 기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
※ 본 청약서의 보장내용 및 부대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 우리 공제회는 공제계약자와 해당 공제약관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공제증서를 교부합니다.

* 본 증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발행한 원본임을 확인합니다.

발급일 : 2024. 10. 04

한국사회복지공제회
이사장 강선경



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(재가)Ⅱ 가입증서

증서번호 : 2024-503486-000

■ 계약사항

계약자	다솜재가노인복지센터	사업자번호	235-80-00781
주소	경남 통영시 용남면 대곡길 35 다솜재가노인복지센터		
공제기간	2024-10-12 ~ 2025-10-12		
종사자 인원	7명	피공제자	재직 요양보호사 전원
특이사항			

※ 공제(보장)기간은 공제기간 초일 00:00 ~ 공제기간 말일 00:00입니다.

■ 가입담보 / 금액

	가입담보	가입금액(천원)			공제기간	공제료 (원)
		1사고당	연간 총 보상한도	자부담		
1	전문직업배상책임-방문요양/목욕 (대인)	50,000	50,000	100	2024.10.12~2025.10.12	153,700
2	전문직업배상책임-방문요양/목욕 (대물)	5,000	10,000	100	2024.10.12~2025.10.12	
3	전문직업배상책임-돌봄업무 (대인)	150,000	150,000	0	2024.10.12~2025.10.12	
4	전문직업배상책임-돌봄업무 (대물)	5,000	10,000	0	2024.10.12~2025.10.12	

※ 돌봄업무 : 사회서비스바우처, 돌봄SOS 사업

■ 적용약관

적용약관	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(재가)Ⅱ 약관
추가 기재사항	<p>□ 우리 공제계약은 청약 당시의 재직 요양보호사 수를 기준으로 연간 확정 공제료를 부과하며, 공제기간 중 추가 입사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공제료 추정 없이 자동 담보합니다. (또한 퇴사에 따른 환급도 없습니다)</p> <p>□ 담보지역 및 재판관할 구역 : 대한민국(국내)</p> <p>□ 보고연장기간 적용 : 60일</p> <p>□ 피공제자가 전문인으로서의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부담보</p> <p>□ 피공제자의 친족에 입힌 손해 부담보</p> <p>□ 전염병으로 인한 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.</p>

※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납입 공제료

공제료	153,700 원	납입구분	일시납
-----	-----------	------	-----

* 본 증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발행한 원본임을 확인합니다.

발급일 : 2024. 10. 05

한국사회복지공제회
이사장 강선경

